

내란 사태 수사 특검이 주도...尹, 거부권 행사 못해

추천위에 여당 국민의힘 배제...3일 이내 임명 안하면 법률 위반 상설특검법상 파견 검사·공무원 최대 35명...수사 기간 60일 규정

상설 특검 수사 어떻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국회 통과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설특검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게 핵심이다.

◇공수처·검·경 수사, 이제 특검 주도...특검안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권고하고 모의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

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진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히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분석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이어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의결한 바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 결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11월 28일 국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과 교섭 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진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하면서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 특검 수사 속도가 관건=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규모와 수사 기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상 파견 검사는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 가능하지만 최대 150일까지 가능한 별도 특검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은 게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 검사도 5명에 불과한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 특검의 파견 검사 규모는 40명에 달한다는 점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의 경우 검사, 수사 인력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었다. 다만, 현재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게 되는 만큼 수사 기간의 제약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란 '동시수사' 혼선에...검찰·경찰·공수처, 수사협의체 가동

대검, 국수본·공수처에 공문 발송...경찰·공수처 "참석하겠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수사권을 다투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경·공수처가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은 수사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혼선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협의체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일정과 참여 대상을 조

율하기 위해서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며,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협의체 구성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3개의 수사기관은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

라며 거절했다. 지난 8일 공수처까지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에 13일까지 사건을 넘겨달라고 통보해 각 기관이 수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다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이 3개 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 제출과 인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20분만에 심사가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인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선처

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실 기 바랍니다"면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공수처가 비상계엄 선포 관계자를 신속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하자,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했다.

국정수습을 맡을 한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

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이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을 핵심인물로 보고 전날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검찰이 한발 빨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상조사 기한 내년 10월 5일까지...1년 더 연장 가능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10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문도 포함됐

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추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당초에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